즉시접수	당일접수
제출자	
총	 건



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

접수	2.		년 5		일	-1 -1 41	등	기관 확인	각종 통지	
	수 [제			호	처 리 인				
	부동산의 표시									
등기	기원인]과 그	1 연원	일일		년 월 일				
등	기 .	의 를	루 적			등기명의인 표시변경				
	_									
변 경 사 항										
구분	<u></u>	선 (사·	고 호- 명	 명 えい		주민등록 (등기용등록		주	소 (소 재 지)	
		(8-	<u>~</u> .0	(d)		(0/100=	1 包工/			
 신										
 청										
- 인										



등 록 면 허 세	급	원
지 방 교 육 세	근	원
세 액 합 계	근	원
	급	원
등 기 신 청 수 수 료	납부번호 :	
	일괄납부: 건	원
 참	부 서 면	
· 주민등록표초본(주소변동이력 3 ·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·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 · 위임장		
	년 월 일	
위 신청인	① (전화:)
(또는)위 대리인	(전화:)
지방법원	귀중	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 - 2.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

	人	ل	월	일	-1		등기관 확인	각종 통지
접 	宁	제		호]처	리 9		

① 부동산의 표시

- 1.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m²
- 2.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
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
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
 1층 100㎡
 2층 100㎡

이 상

② 등	기원인과 그 연월일	2017년 5월	25일 전거		
③ 등	- 기의 목적	등기명의인 표	시변경		
④ 변		갑구 3번 등기명의인 이대백의 주소 "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96(다동)"을 "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(서초동)"로 변경			
구분	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)	주	소 (소	채 지)
5					
신	이 대 백	700101 1224567	서울특별시	서초구	서초대로88길
청	VI -III	700101-1234567	10(서초동)		
인					



⑥ 등 록 면 허 세	금 1	2,000 원					
⑥ 지 방 교 육 세	급	2,400 원					
⑦ 세 액 합 계	금 1	4,400 원					
	급	6,000원					
⑧ 등기신청수수료	납부번호 : 12-12-12345678-0						
	일괄납부 : 건	<u> </u>					
9	첨 부 서 면						
• 주민등록표초본(주소변동이력 포함) 1 통 •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 통 •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5 통							

삭1행

2017년 5월 26일

① 위 신청인 이 대 백 ② (전화: 010-1234-5678)

(또는)위 대리인 (전화:)

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귀중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2.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등기신청안내서 -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

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란

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(저당권자, 전세권자, 임차권자 등)의 표시(주소 등)가 변경되어 등기기록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.

■ 등기신청방법

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.

■ 등기신청서 기재요령

※ 신청서는 한국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. 부동산의 표시산이나 신청인산 등이 부족항 경우에는 벽지를 사용하고, 벽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(신청 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)을 하여야 합니다.

① 부동산의 표시란

토지(임야)는 소재와 지번, 지목, 면적 순으로, 건물은 소재와 지번, 도로명주소(등기 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), 구조, 종류, 면적 순으로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되게 기재합니다.

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

등기원인은 "전거" 등으로, 연월일은 전거로 인한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(초)본상 전거일을 기재합니다.

(예) ○년 ○월 ○일 전거

③ 둥기의 목적란

"등기명의인 표시변경" 이라고 기재합니다.

④ 변경사항란

변경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.

(예) 갑구(또는 을구) ○번 등기명의인 ○○○의 주소 "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○○"로 되어 있는 것을 "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○○"로 변경

⑤ 신청인란

그 표시가 변경될 자의 변경 후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합니다. 그러나



법인인 경우에는 변경 후의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변경 후의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(관리인)의 성명, 주민 등록번호,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.

⑥ 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란

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,000원, 지방교육세 1,2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.

⑦ 세액합계라

등록면허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⑧ 등기신청수수료란

- ② 부동산 1개당 3,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,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, 전자납부,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 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- ④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 료,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,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 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(일괄납부는 은 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).

⑨ 첨부서면란

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.

⑩ 신청인등란

- ②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하되, 신청인이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와 대표자(관리인)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(관리인)의 인장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.
- ①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.

■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

< 신청인 >

① 위임장

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.



< 시·구·군청, 읍·면 사무소, 동 주민센터 >

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

시장, 구청장,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(OCR용지)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 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,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.

② 주민등록표초본(주소변동이력 포함)

주소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(발행일로 부터 3월 이내)을 첨부합니다. 주민등록표초본에는 등기기록상의 전 주소와 변경하 고자 하는 주소가 나타나고 변경 전후의 주소가 연결되어야 합니다.

<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, 금융기관 등 >

둥기신청수수료

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)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(신용카드, 계좌이체, 선불형지급수단)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 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,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 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를 첨부합니다.

< 등기과 · 소 >

법인등기사항증명서

주소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를 첨부합니다. 위 증명서(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에는 등기기록상의 전 주소 등과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 등이 나타나고 변경 전후의 주소 등이 연결되어야 합니다.

< 기 타 >

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, "대법원 종합법률정보 (http://glaw.scourt.go.kr)"의 규칙/예규/선례에서 『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, 등기예규 제1568호』 및 『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, 등기예규 제1435호』 등을 참고하시고,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,



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 · 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

신청서,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,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, 위임장, 주민등록표초 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.